

국립생태원공고 제2016 - 11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엽(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립생태원장

2016년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개정고시(안) 국민열람 공고

- 1. 대상지역 : '추자 336021' 도엽 등 149개 도엽
-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 3.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도엽 목록

번호	도엽번호		번호	도엽번호	
1	추자	336021	76	내라노	347064
2	도두	336062	77	금당	347091
3	한림	336063	78	거금	347092
4	귀일	336064	79	평일	347093
5	제주	336071	80	시산	347101
6	함덕	336072	81	외라도	347102
7	오라	336073	82	예내	347111
8	와산	336074	83	초도	347132
9	김녕	336081	84	적만	347141
10	우도	336082	85	덕춘	347143
11	송당	336083	86	말도	356023
12	신양	336084	87	신시	356024
13	고산	336101	88	오식	356031
14	저지	336102	89	위도	356063
15	무릉	336103	90	안마	356093
16	모슬포	336104	91	송이	356094
17	회수	336111	92	화가	356131

번호	도엽번호		번호	도엽 번호	
18	한라산	336112	93	낙월	356132
19	강정	336113	94	임자	356133
20	서귀	336114	95	지도	356134
21	위미	336121	96	적상	357032
22	표선	336122	97	무풍	357041
23	비금	345044	98	대덕	357042
24	홍도	345052	99	지례	358011
25	대흑산	345062	100	옥련	358012
26	도초	345082	101	성주	358021
27	우이	345083	102	왜관	358022
28	신도	345084	103	칠곡	358031
29	접우	345122	104	동춘	358032
30	눌옥	345124	105	하양	358041
31	소흑산	345133	106	영천	358042
32	거차	345162	107	아화	359011
33	자은	346011	108	안강	359012
34	매화	346012	109	연일	359021
35	암태	346013	110	용덕	359022
36	팔금	346014	111	구룡포	359031
37	기좌	346051	112	감포	359033
38	안창	346052	113	용화	367163
39	하의	346053	114	궁촌	367164
40	율리	346054	115	순흥	368031
41	화원	346061	116	김천	368133
42	용양	346062	117	월곡	368134
43	문내	346063	118	해평	368142
44	황산	346064	119	약목	368143
45	해남	346073	120	인동	368144
46	영춘	346074	121	군위	368151
47	칠량	346083	122	다부	368153
48	관산	346084	123	대울	368154
49	가사	346091	124	용소	368162
50	지산	346092	125	신령	368163
51	조도	346093	126	양항	368164
52	슬도	346094	127	용산	369133
53	진도	346101	128	기계	369134
54	마도	346102	129	포항	369143
55	구자	346103	130	환호	369144
56	어불	346104	131	대보	369153
57	일평	346111	132	죽산	377144

번호	도엽번호		번호	도엽 번호	
58	신월	346112	133	양성	377163
59	산정	346113	134	문곡	378114
60	완도	346114	135	호명	378123
61	고금	346121	136	광동	378124
62	덕도	346122	137	옥동	378151
63	신지	346123	138	예미	378152
64	생일	346124	139	용진	378153
65	관매	346131	140	백운	378161
66	독거	346132	141	함백	378162
67	서넙도	346142	142	마차	379093
68	장사	346151	143	하마	379094
69	소안	346152	144	장호	379103
70	자개	346153	145	도계	379131
71	대모	346161	146	탕곡	379132
72	칭산	346162	147	철암	379133
73	소록	347053	148	임원	379141
74	도양	347054	149	울릉	379151
75	고흥	347063	-	-	-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 도엽(1:25,000)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홈페이지(<http://www.nie.re.kr>)에 15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합니다.

5. 의견제출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5일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생태원장(참조 : 생태평가연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붙임 양식)

- 이의신청지역 위치, 조정요구 내용, 이의 제기 사유, 연락처 등 기재
나. 등급지정 오류나 자연적 혹은 적법한 토지피복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5부)

-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증 소지자)의 조사결과서(1계절) 또는 소견서 첨부

※ 최신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식생보전등급 V등급(주거지, 시가지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상기 조사결과서 및 소견서 생략
가능(최신 위성사진 및 현장 사진, 개발 승인서류 등 첨부 필요)

※ 문의 : 국립생태원 생태평가연구실(041-950-5402, 5367)

- 붙임 1.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대상지역 1부.
2.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149개 도엽 1식.
3.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이의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1부.